

소규모 건설공사

주요 지적사항 및 관련 규정

2023

Chapter 1 주요 지적사항

- 01 품질시험실 미설치
- 02 품질시험장비·기구 미배치
- 03 품질관리자 미배치 / 자격 미달
- 04 품질시험 미실시
- 05 품질관리비 미계상
- 06 품질관리자 교육 미이수
- 07 안전관리계획서 미작성 / 승인절차 미이행
- 08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실시시기 부적정
- 09 철근 배근 불량 / 콘크리트 균열관리 미흡
- 10 착공신고(감리투입) 전 무단시공
- 11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미확인
- 12 토목분야 감리원 미배치



Chapter 2 관련 규정

- 01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 02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03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04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 05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 05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Chapter 3 벌점제도 관련기준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CHAPTER

01

건설현장 주요 지적사항

01 품질시험실 미설치

02 품질시험장비·기구 미비치

03 품질관리자 미배치 / 자격미달

04 품질시험 미 실시

05 품질관리비 미계상

06 품질관리자 교육 미이수

07 안전관리계획서 미작성 / 승인절차 미이행

08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 실시시기 부적정

09 철근 배근 불량 / 콘크리트 균열관리 미흡

10 착공신고(감리투입) 전 무단시공

11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미확인

12 토목분야 감리원 미배치

1 품질시험실 미설치

주요 사례

경상북도 ○○시에서 인·허가한 공사비 44억원, 연면적 3,200㎡ 규모의 ○○ 공동 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자는 레미콘 등 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감리자는 이를 확인·시정 조치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

○ 관련규정

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실 규모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 벌점부과

구분	부실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가 13) 가)	-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사업관리기술자	나 7) 가)	- 시공자가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점

2 품질 시험장비·기구 미비치

주요 사례

○○시에서 발주한 공사비 49억원, 연면적 3,700㎡ 규모의 ○○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감리자는 이를 확인·시정 조치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

○ 관련규정

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벌점부과

구분	부실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가 13) 가)	-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사업관리기술자	나 7) 가)	- 시공자가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점

3 품질관리자 미배치 / 자격미달

주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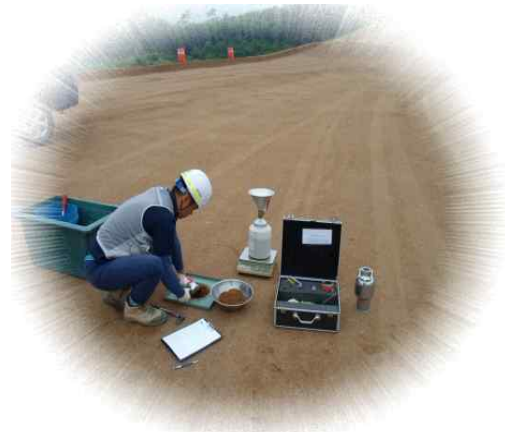
- ○○군에서 인·허가한 공사비 48억원, 연면적 5,200㎡ 규모의 ○○ 신축공사는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서 품질관리자를 초급 1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품질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감리자는 이를 확인·시정 조치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
- ○○시에서 인·허가한 공사비 177억원 규모의 ○○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서 품질관리자를 중급 1인, 초급 1인을 배치하였으나, 중급품질관리자로 선임된 품질관리자는 자격요건에 미달되며, 감리자는 이를 확인·시정 조치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

○ 관련규정

공사구분	공사규모	품질관리자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 벌점부과

구분	부실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가 13) 가) ~ 나)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점
		-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2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사업관리기술자	나 7) 가) ~ 나)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점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2점



4 품질시험 미실시

주요 사례

○○군에서 발주한 공사비 110억 ○○○의 강 사업은 교량, 옹벽, 가동보 및 콘크리트 포장 등 점검일 현재 콘크리트 주요 물량 3,554m³를 시공하였는데 염화물, 공기량, 슬럼프 및 압축강도 시험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납품업체(레미콘공장)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감리자는 현장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데도 이를 확인·시정 조치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

○ 관련규정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2항)
-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 벌점부과

구분	부실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가 15) 나)	- 슬럼프, 염분함유량, 압축강도 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사업관리기술자	나 8) 나)	- 주요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의 품질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1점

5 품질관리비 미계상

주요 사례

○○청에서 발주한 공사비 223억원, 연면적 12,300m² 규모의 ○○○ 신축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나, 품질관리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계상토록 조치가 필요함.

○ 관련규정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 제2항 제2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6 품질관리자 교육 미이수

주요 사례

○○청에서 인·허가한 공사비 53억원, 연면적 9,247㎡ 규모의 ○○동 ○○신축공사는 초급품질관리대상으로 품질관리자를 '17년 2월 ○○○에서 ○○○로 변경하였으나 ○○○ 품질관리자는 '17년 2월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로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관련규정

구 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 벌점부과

구 분	부실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가 13) 다)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1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사업관리기술자	나 7) 나)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2점

○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건설기술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 제3항 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7 안전관리계획서 미작성 / 승인절차 미이행

주요 사례

- ○○광역시 ○○군청에서 인·허가한 공사비 50억원, 연면적 3,500㎡ 규모의 ○○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이나 안전관리계획서가 미작성 되어있으며, 감리자는 이를 확인·시정 조치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
- ○○시에서 인·허가한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5,539㎡의 신축공사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은 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인허가 기관에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함(점검일 현재 공정율이 약 26%임)

○ 관련규정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 벌점부과

구분	부실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가 11) 다)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사업관리기술자	나 4) 가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3점

8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 실시시기 부적정

주요 사례

○○광역시 ○○본부에서 발주한 연면적이 51,617㎡인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주차장 일부 구간은 지하2층 바닥슬라브 및 벽체시공을 완료하고, 지하1층 바닥슬라브 타설완료 후 기동철근 및 거푸집을 설치 중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 및 당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에 정기안전점검이 계획되어 있으나, 1차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리자는 이를 확인·시정 조치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

○ 관련규정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4항)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제1항제1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47호, 2020.1.23.)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벌점부과

구분	부실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가 11) 나)	-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사업관리기술자	나 4) 가)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3점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¹⁾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²⁾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9 철근 배근 불량 / 콘크리트 균열관리 미흡

주요 사례

- ○○○○에서 발주한 ○○○○○○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다목적강당 엘리베이터실 벽체CW12(T 200, L=2,350)의 수직근(HD10@200)의 개수가 부족(11조 22가닥→ 9조 18가닥)하고 배근간격이 200mm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며 일부구간에 처짐이 발생되어 있으며, 감리자는 이를 확인·시정 조치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
- ○○시에서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양생/보양을 통하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푸집 탈형이후에는 균열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 작성과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나, 지하주차장 선근2 계단실(지하2층)에 균열이 아래와 같이 2개소 발생하였으나 현장 균열 표기 및 균열관리대장에 누락되어 균열관리를 하지 않음

○ 벌점부과

구분	부실번호	주요 부실 내용	벌점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가 2) 가) ~ 라)	-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3점
		-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점
		-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점
		-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0.5점
가 3) 가) ~ 다)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3점	
	-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점	
	-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사업관리기술자	나 1) 가) ~ 라)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점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점
		-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점
		-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점

10 착공신고(감리투입)전 무단시공

주요 사례

○○시에서 인·허가한 공사비 28억원, 지하1층/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착공계를 '17.9.20일 수리하였고, 감리는 '17.9.19일 계약 착수하였음. 그러나 본 공사 지하 흠막이 공사(시트파일)는 착공계 및 감리투입 이전인 '17.8.20일 착수하여 9.4일 완료하여 시공사 무단으로 시공함.

○ 관련규정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1조)

○ 벌칙(건축법 제110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처분대상	위반내용	처분내용
건축주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자	-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11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미확인

주요 사례

○○시에서 인·허가한 공사비 28억원, 지하1층/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흠막이 가설구조물은 당초 SCW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실지 시공은 시공사 임의로 시트파일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않음.

○ 관련규정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1조의2제1항)
-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흠막이 지보공
 -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벌칙(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처분대상	위반내용	처분내용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관계전문가의 확인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토목분야 감리원 미배치

주요 사례

○시에서 인·허가한 공사비 지하6층/지상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하 흙막이 토목공사(최하부 6단 띠장)를 진행중인 현재 당초 인·허가기관에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는 것으로 제출한 토목감리원이 '00.0.00 퇴직한 이후 교체 투입없이 공사를 시행중에 있음.

○ 관련규정

-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 벌점부과

구분	부실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나 11) 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	2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6

- 건설공사의 개요
- 비계 설치 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①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비계 설치 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그림 등 예시자료

CHAPTER

02

관련 규정

01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02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03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04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05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05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1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항 [별표 9]

- | | |
|---|---|
| <p>1. 개요</p> <p>가. 공사명</p> <p>나. 시공자</p> <p>다. 현장 대리인</p> <p>2. 시험계획</p> <p>가. 공종</p> <p>나. 시험 종목</p> <p>다. 시험 계획물량</p> <p>라. 시험 빈도</p> <p>마. 시험 횟수</p> <p>바. 그 밖의 사항</p> | <p>3. 시험시설</p> <p>가. 장비명</p> <p>나. 규격</p> <p>다. 단위</p> <p>라. 수량</p> <p>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p> <p>바. 그 밖의 사항</p> <p>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p> <p>가. 성명</p> <p>나. 등급</p> <p>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p> <p>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경력 사항</p> <p>마. 그 밖의 사항</p> |
|---|---|

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4항 [별표 5]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 가.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 1)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 3)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제3호다목의 방법에 따른다는 내용
- 다.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 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 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 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frac{(\text{상각률} + \text{수리율}) \times \text{기계가격}}{\text{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times \text{내용연수}} \times \text{장비가동시간}$$

- ※ 기계가격은 구입 가격을 말한다.
-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 구분	상각률	수리율
모터 및 기계	0.8	0.6
케이지 기계	0.8	0.6
유리류	1.0	-
금속류	0.9	0.3
계 이 지	1.0	0.6

- 6)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 7)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계상한다.
- 8) 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역	비고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가)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 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된 비용	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나)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다)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마)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가)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나) 교육자료 준비비 다) 품질 관련 행사비 라) 건설기술인 및 시험인력의 외부 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4) 품질검사비	가)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나) 내부 품질검사비 다)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5)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 [(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4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2항 [별표 6]

1. 교육·훈련의 종류

-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 1)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가. 기본교육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전문교육

-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설계시공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1) 일반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건설기술인은 계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비고

1. 위 표 나)(1)에서 "현장배치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 위 표 나)(2)에서 "책임기술인"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이나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1)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나) 계속교육	(1) 일반 계속교육	(가)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나)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2)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다) 승급교육		(1)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2)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다)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최초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계속교육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승급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과의 관계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정하되, 교육·훈련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나. 교육·훈련은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또는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과정의 편성,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중시설물 및 2중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층 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6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상수도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CHAPTER

03

벌점제도 관련기준

01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1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5항 [별표8]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별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별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건설기술인등"이란 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및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라.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구분	주요 구조부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플랜트	기초, 설비 서포터
교량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 콘크리트 슬래브, 라멘구조부, 교량받침, 주탑, 케이ابل부, 앵커리지부
터널	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철근콘크리트라이닝, 세그먼트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갱구부 사면
도로	차도, 중앙분리대, 측도, 절토부, 성토부
철도	콘크리트궤도, 승강장, 지하역사 구조부, 지하차도, 지하보도, 여객통로
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쓰레기·폐기물 처리장	기초, 콘크리트 구조부, 설비 서포터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철골 구조부, 수로터널, 관로이음부
하수·오수 처리장	수조 구조부, 수문 구조부, 펌프장 구조부
배수펌프장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유입수문, 토출수문, 통문, 통관
항만·어항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널말뚝, 토류벽, 강말뚝, 강널말뚝, 상부공, 직립부, 콘크리트 블럭, 케이슨, 사석 경사면, 소파공, 기초부
하천	하구둑, 보, 수문 본체, 문비, 제체, 호안

댐	본체, 여수로, 기초, 양안부, 여수로 수문, 취수구조물
옹벽	지반, 기초부, 전면부, 배수시설, 상부사면
절토사면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공동구	공동구 본체
삭도	상부앵커, 하부앵커, 지주, 케이블

- 마. "그 밖의 구조부"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구조부를 말한다.
- 바. "주요 시설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개별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그 밖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설치 계획을 말한다.
- 사. "그 밖의 시설계획"이란 주요 시설계획이 아닌 시설계획을 말한다.
- 아. "주요 구조물"이란 주요 시설계획에 포함된 구조물을 말한다.
- 자. "그 밖의 구조물"이란 주요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을 말한다.
- 차. "배수시설"이란 배수관·배수구조물·배수설비 등 우수(雨水)와 오수(汚水)의 배수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밖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 카. "방수시설"이란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 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타. "건설 기계·기구"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그 밖에 건설공사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 파.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사용성 및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의 폭을 말한다.
- 하. "재시공"이란 공사 목적물의 시공 후 구조적 파손 등으로 인한 결함 부위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거나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거. "보수·보강"에서 보수란 시설물의 내구성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耐荷力)이나 강성(剛性) 등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너. "경미한 보수"란 결함 부위를 간단한 보수를 통하여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더. "수요예측"이란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 시설물 규모의 결정, 건설공사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등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2. 별점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별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별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1)가)·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벌점 산정방법

- 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벌점으로 한다.
- 나. 합산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벌점 적용기준

- 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합산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 나. 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 다. 벌점은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5. 벌점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별점
1)	토공사의 부실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3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보강(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0.5
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5)	배수상태의 불량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2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1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0.5
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보강(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0.5
7)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3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2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8)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	1 0.5
10)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3 2
11)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3 3 2
1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2 1
13)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실·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0.5

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나) 건설 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2 1
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몰타기를 한 경우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3 1
16)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몰타기를 한 경우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 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3 2 1
17)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1 0.5
18)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2 1
19)	계측관리의 불량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나) 설계도서(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2 1 0.5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별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별점
1)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3 2

	<p>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p> <p>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1</p> <p>0.5</p>
2)	<p>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p> <p>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p> <p>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p> <p>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p>	<p>3</p> <p>2</p> <p>1</p>
3)	<p>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p> <p>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p> <p>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p> <p>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p> <p>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p>3</p> <p>2</p> <p>1</p> <p>0.5</p>
4)	<p>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p> <p>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p> <p>나)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p>	<p>3</p> <p>2</p>
5)	<p>설계 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p> <p>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p> <p>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p> <p>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p>	<p>2</p> <p>1</p> <p>0.5</p>
6)	<p>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p> <p>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p> <p>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p> <p>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2</p> <p>1</p> <p>0.5</p>
7)	<p>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p> <p>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p>	<p>3</p>

	나)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2
	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
	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0.5
8)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가)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가 사용된 경우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2 1 0.5
9)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0.5
10)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2 2
1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입대·이민·사망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1

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1
14)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가)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나)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15)	가설구조물(가교,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구조검토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 가)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구조검토 절차를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3 2
16)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	1 0.5
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1
18)	하도급 관리 소홀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2 1

다. 그 밖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2)	토질·기초 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1
4)	구조·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발생한 경우	1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1	
다) 토공사·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0.5	
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3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다)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1
	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가)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8)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9)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입대·이민·사망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나) 같은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1
10)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0.5
11)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2 1
12)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된 경우	1

라.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별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별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실을 측정하고 별점을 부과할 수 있다.

바. 별점 경감기준

1)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별점의 20%를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다음 반기에 부과된 별점을 경감한다.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36%	49%	59%

2) 반기 동안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하 "관리우수 비율"이라 한다)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한다.

관리우수 비율	80% 이상 ~ 90% 미만	90% 이상 ~ 95% 미만	95% 이상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3) 무사망사고에 따른 경감과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먼저 적용한다.

4) 사망사고 신고를 지연하는 등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한다.

사. 벌점 부과 기한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

6. 벌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한다.

- ✓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벌칙)제5의2호)
-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7호)
- ✓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14호)
- ✓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관리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2항4호)
- ✓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8호)

✓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가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교통부로 신고토록 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여 건설사고 감소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고 발생을 인지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제외)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절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
작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사고 신고: 건설공사 참여자(6시간 이내) - 자체 사고 조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48시간 이내) • 신고 방법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사고보고 / 조사
작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대상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 • 건설공사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 • 건설사고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신고 절차	
신고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명: KISCON 등록 공사명 일치 필요(미등록시 수기 입력) - 사고발생 일시 / 장소 - 피해상황: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 사고신고 사유 / 사고발생 경위 • 수신자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인허가기관 선택 • 신고자 소속기관으로 가입 후 신고 가능하며, 비회원 신고 시에도 소속기관은 최초 등록이력이 있어야 함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